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7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대재해법 시행 등에 따라 건설안전에 관한 업계의 책무가 강화되고 기술인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안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업체·기술인에 대한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 등을 각각의 책무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는 한편,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 등을 진작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감기준을 확대하고,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잘 관리한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사업자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감하고 남은 점수는 적립·활용토록 하는 등 제도를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업체·기술인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에 대해 각각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 신설(안 별표 8 제5호)

- 또한, 건설사업자 등 시공사의 주도적 권한으로 시행되는 기술인 배치 사항 등의 경우 위반시 벌점 대상은 당해 시공사로 한정 (안 별표 8 제5호 가목 13)

나. 벌점 부과요건을 업체·기술인 각각의 책무와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보완(별표 8 제5호 가·나·다 목)

다.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할 확대, 안전관리 노력 진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에만 적용하는 무사망 사고 경감기준 적용(안 별표 8 제5호 바목)

라.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관리하도록 벌점 경감기준 중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경감하고 남은 점수를 적립·활용토록 혜택 확대 (안 별표 8 제5호 바목)

3.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yeonhyng@korea.kr

- 팩 스 : 044-201-5553(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3,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